

의안번호	제 44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03. .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연월일	2003. 12. 4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
----------	----

제출일자 : 2003. 12. 4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4명 중 실업대책(공공근로 사업)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6급1명의 존속기한이 200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시정원(9급1명)으로 환원하고, 한시정원을 재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실업대책(공공근로 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상시정원 환원
 - 한시정원(행정6급 1명) → 상시정원(행정9급1명)
- 한시정원 재규정(안 조례 제 479호)
 - 한시정원: 4명(5급1, 6급1, 7급1, 8급1) → 3명(5급1, 7급1, 8급1)
- ※ 한시정원(4명) 존속기한
 - 실업대책인력(지역경제과 행정6급 1명) → 2003. 12. 31
 -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인력(주민자치과 행정5급 1명)
정보화사업 추진인력(민원정보과 전산7, 8급 각 1명)
→ 2004. 6. 30

3. 법적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103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실업대책 조직 시한연장관련 지침

(경남도 행정 12200- 12497, 2002. 12. 10)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479호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은 2004년 6월 30일 까지로 하고, 그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부 칙(제479호)</p> <p>①(생략)</p> <p>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그 중 1명은 2004년 1월 1일부터, 그 외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각각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p>	<p>부 칙(제479호)</p> <p>①(현행과 같음)</p> <p>②(한시정원) ----- 3명은 2004년 6월 30일 까지로 하고, 그 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p>

관 계 법 령 발 취

지 방 자 치 법

第103條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大統領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地方公務員의 定員管理에 있어서 그 規模의 適正화와 運營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地方公務員의 任用과 試驗·資格·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敎育訓練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④地方自治團體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公務員을 둘 수 있다.

⑤第4項에 規定된 國家公務員은 國家公務員法 第3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5級이상의 國家公務員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提請으로 所屬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고, 6級이하의 國家公務員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提請으로 所屬長官이 任命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실업대책조직 시한 연장관련 지침

(경남도 행정 12200- 12497, 2002. 12. 10)

<개 정 요지>

- 실업대책 인력 담당또는 팀장의 정원 연장
- 2002. 12. 31 → 2003. 12. 31(기한 만료시 본래의 정원으로 환원)

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기존실업대책 업무 관련부서에 효율성을 고려, 담당 또는 팀 체제로 3명내외 (6급 1, 7급 이하 2) 운영

나. 환원 조정된 정원은 지역실정에 맞게 실업대책 관련 인력으로 재배치 활용